

(별지 제10호 서식)



행정기관명



수신자

(경유)

제목 **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서**

1. 관세법 제108조제2항, 동법시행령 제132조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21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입니다.
2. 귀 회사에서 용도세율의 적용, 관세의 감면 등을 받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물품 중 아래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여부를 귀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확인후 **별지 제11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**에 관련 증빙서류(예) 반입사실 입증서류, 제조완료보고서·사용(소비)사실 확인서, 원자재 소요량증명서, 공공기관장 등의 분배(사용)사실 확인서, 사진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20 . . .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가.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 물품 명세(예)

연번	사후관리 번호	수입신고 번호(란)	수리일	HS번호	품명	규격	수량	과세가격 (천원)	감면등 부호	사후관리 기간	비고

나.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 사항

구 분	확 인 사 항	확인결과		위반 내역	비고
		이상없음	이상있음		
공 통	업종 : /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				
	사후관리서류상 품명·규격·제조번호·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				
	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와 사용(양도임대판매) 또는 폐기여부				
	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(또는 일시수출) 여부				
	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(사용)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/ 1월내 반입 여부				
	멸실, 법인 합병·해산, 본인 사망, 파산,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/ 변경사실등 신고여부				
	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				
	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				
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/ 3월경과 전부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					
기계, 기구 등	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/ 통관표지 부착 여부(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)				
원재료, 부분품등	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/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				

※ 서면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

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별지 제11호 서식은 관세법령정보포털(unipass.customs.go.kr/clip) - 법령·판례 등 - 행정규칙
중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별표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○ ○ 세 관 장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 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 (시행일자)

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 (접수일자)

우 000-000 (주소)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 000-000-0000

전송 000-000-0000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